2018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분야)

상담사례집

2018.11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Contents

01 인 건 비

- 개인사업자 연구과제 참여 1
- 인건비 지급 시 참여율 계상 1
- 참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 2
- 출산휴가 인건비 지급 2
- 출연(연)/특정연 연구원 참여율 계상 3
-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인건비 계상 4
-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기타(영리) 기관 4
- 중소기업 신규채용 시 인건비 현금계상 5
- 해외파견 시 인건비 지급 5
- 전문연구요원 인건비 지급 6
- 시간강사 인건비 지급 7
- 외부참여연구원 증빙서류 8
- 인문계열 과제 참여연구원 8
- 4대보험 포함 인건비 계상 9
- 외부인건비 집행 방법 9

- 학생연구원 출연(연) 과제 참여 10
- 연구조교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10
- 창업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11
- 연구참여확약서 11
- 휴직 중인 학생연구원 인건비 집행 12
- 수료 후 학생인건비 지급 12
- 시간강사 학생인건비 지급 13
- 학생인건비 변경승인절차 문의 13
- 박사후연구원 학생인건비 계상 14
- 휴학생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14
- 외국인 학생연구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
- 참여연구원의 가족 연구과제 참여 15
-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이월 16
- 학생인건비 통합 기관 학생인건비 이관 16

02 연구장비재료비

- 3천만원 미만 기자재 구입 변경 17
- 미계상 장비 임차료 17
- 미계상 PC 구입 18
- 미계상 범용성장비 구입 18
- 미계상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19
- 구입가능품목 / 범용성장비 19
- 내부기관 장비대여료 집행 20
- 시작품 납품기한 20
- 비목 문의 / 시험분석료 21
- 연구장비·재료비 예산 증액 21
- 계상된 범용성 장비 비용 증액 22
- 연구종료시점 장비구입 가능 여부 22
- 연구종료시점 재료구입 가능 여부 23

- 이관 과제 장비 소유권 23
- 장비 구매처 변경 24
- 타과제 연계 장비 공동 구매 24
- 장비 분할 납부 25
- 연구장비 참여기업에 설치 여부 25
- 다년도 시작품 제작비 집행 26
- 중앙구매 기준 금액 26
- 장비 유지보수 비용 27
- 범용성 장비 유지보수 비용 27
- 장비 설치 및 이전 비용 28
- 다년도기간 소프트웨어 일괄 집행 28
- 장비 운반 차량 비용 29
- 연구장비 현물 계상관련 문의 29
- 지체상금 운용 방법 30
- 외자구매시 환율변동에 의한 장비비용 증액 30
- 부품만 구매 불가시 완제품 구매 가능 여부 31

03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_연구년 중 국내학회 참석 32
- 국외여비_연구년 중 국외출장 32
- 국외여비_차년도 학회 선 집행 33
- 국외여비_연구비 집행 기간 33
- 국외여비_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34
- 국외여비_학회 측 여비지원 34
- 국외여비_여비규정 35
- 국외여비_항공 취급수수료 35
- 국외여비_국제 면허증 발급 36
- 국외여비_ESTA 발급 비용 36

- 국외여비_차량 렌트 37
- 국외여비_귀국당일 여비집행 38
- 국외여비_단순 학회 참석 38
- 국외여비_학회로부터 자문료 지원 39
- 국외여비_단순 회의 참석 39
- 교육훈련비_워크숍 참가자 여비 40
- 교육훈련비_온라인 강의 수강 40
- 교육훈련비_VOD 구매 가능여부 41
- 교육훈련비_수강료 41
- 기술정보활동비_용역비 42
- 기술정보활동비_논문게재료 저자 42
- 기술정보활동비_논문 이미지 삽화 43
- 기술정보활동비_논문게재료 집행시점 43
- 기술정보활동비_논문 저널 표지 44
- 기술정보활동비_단기인력 비용 44
- 문헌구입비_E-book 구매 45
- 문헌구입비_동일 도서 구매 45
- 문헌구입비_연간 구독료 46
- 설문조사답례품_기프티콘 46
- 설문조사비_문자서비스 47
- 수용비 및 수수료_신규 채용공고 47
- 세미나 개최비_식대 48
- 세미나 개최비_숙박 장소 49
- 시험 분석료_내부거래 50
- 임상실험비_보험료 지급 50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_임상실험 51
- 임상실험비_IRB심사료 51
- 전문가 활용비_피험자 사례비 기부 52
- 전문가 활용비_국외 자문료 53
- 전문가 활용비_지급 대상 53
- 전문가 활용비_최소 단위 부서 53

- 특허정보 조사비_특허 기탁비 53
- 참여연구원 특수 건강검진 54
- 피험자 답례비 지급 방식 54
- 학회 등록비_차년도 선집행 55
- 피험자 답례품 55
- 학회등록비_협의회 가입비 56
- 세미나 개최비_취소 수수료 56
- 학회등록비_발표자료 구입 57
- 학회등록비_연구기간 외 집행 57
- 학회등록비_이사회비 58
- 학회등록비_참여종료 시 연회비 58

04 연 구 과 제 추 진 비

- 국내여비_식비 중복집행 59
- 국내여비_연구년 중 국내 출장여비 60
- 사무용품비_결제방법(법인카드 사용 가능여부) 60
- 사무용품비_구입가능품목(연구노트) 61
- 사무용품비_과제종료시점 임박 사무용품 구입 61
- 야근식대 집행 기준 62
- 연구환경유지비_연구기간 외 렌탈비용 처리 62
- 회의비 및 야근식대 휴일 집행 63
- 회의비_10만원 이하 회의비 집행 증빙 서류 63
- 회의비_내·외부 참석자 기준 64
- 해외에서의 회의비 집행 및 시간 64
- 국내여비_휴일 국내여비 집행 65
- 국내여비_출국 전 국내 숙박비 집행 65
- 주관기관 숙박비 상한액 초과집행 66
- 국내여비_법인카드 결제가능 여부 66
- 국내여비_실비 지급 건 계좌이체 가능 여부 67

- 국내여비_계획서 미계상 출장 건 67
- 국내여비_과제종료시점 출장 가능 여부 68
- 국내여비_미지급 참여연구원 여비 지급 68
- 국내여비_시내교통비 지급 가능 여부 69
- 국내여비_식비 중복집행(숙박비 조식포함) 69
- 국내여비_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 70
- 국내여비_연구목적 외 집행 70
- 국내여비_국내출장 출발지역 71
- 국내여비_강의를 위한 출장여비 지급 71
- 국내여비_권역별 설명회 참석 여비 72
- 국내여비_출장 시 타지역 경유 72
- 국내여비_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73
- 국내여비_공무원 여비규정 변경 시 지급기준 73
- 국내여비_주관기관 여비규정 적용 74
- 국내여비_사업단 자체규정 적용 74
- 국내여비_여비 증빙자료 75
- 국내여비_타과제 연계 지급 75
- 국내여비_항공료 지원 76

05 연구수당

- 최종 종료 후 집행 77
- 연구수당 부당 집행 기준 77
- 1인과제 연구수당 단독수령 78
- 단독 수령 가능 여부 78
- 연구수당 집행 비율 79
- 연구수당 증액 및 감액 79
- 이관과제_기존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지급 80
- 연구수당 이월금 집행 80
- 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 감액기준 81

- 연구수당 정액 지급 81
- 해외참여연구원 연구수당 82
- 해외 연구년 중 연구원 연구수당 지급 82

06 위 탁 연 구 개 발 비

- 위탁연구과제 부가가치세 83

07 간 접 비

- 간접비 감액 84
- 비영리기관 간접비 기관 흡수 84
- 연구지원비 85
- 특허출원비 직접비 지출 85
- 냉·난방기기 설치비용 86
- 연구실안전관리비 86
- 주관기관 변경 후 간접비 처리 87
- 폐기물 처리비용 87
- 실험복 집행 88

01. 인건비

Q&A

개인사업자 연구과제 참여

박사과정 학생이 한의원을 개원하여 개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연구원이 외부인건비 미지급으로 연구과제에 참여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주관기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참여율 계상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지급 시 참여율 계상

A대학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받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A대학에서의 참여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면 B대학에서 현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A대학의 참여율과 B대학의 참여율 합이 1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B대학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체결 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

저희 사업(A)에 참여 기관(B)이 있습니다. A기관과 B기관 모두 영리 기관입니다. B기관(참여기업)에 외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인건비 총액을 계산하여 용역 계약을 맺고 일괄 지급 할 수 있는지요?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원소속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통보 후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인건비 지급

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원이 3개월 출산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도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연구과제 수행중인 참여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식 휴가로 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주관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연) / 특정연 연구원 참여율 계상

A기관(출연(연))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인건비 참여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출연(연) 또는 특정연의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를 최대 130%이내로 계상할 수 있지만 개인별 인건비 지급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 지급참여율이 130%라면 미지급으로 연구수행은 불가한가요?

인건비 최대한도(참여율 합산 130%)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동비목 계산을 목적으로 참여율 계상이 불가합니다. 즉, 미지급 인건비로 연구에 참여는 불가합니다.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인건비 계상

A정부출연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인건비 계상 시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건비 산정기준은 급여총액 × 참여율입니다.
급여총액은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정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으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의한 경영성과급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기타(영리) 기관

A기업(영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 연구 수행 시 현금계상이 가능할까요?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소기업 신규채용 시 인건비 현금계상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과제만을 위해 채용되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여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가요?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기관이며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 인력의 경우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이 퇴직 후 재입사하거나 계약 변경된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해외파견 시 인건비 지급

17년 3월 협약 시 참여연구원의 해외 파견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11월 미국 기관으로 해외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참여연구원이 해외파견 시 주관기관에서 자체변경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사명령 문서를 구비 하시고 해외 파견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인건비 지급

저희는 A대학이며 해당 전문연구요원은 B대학 박사과정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A대학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과제 참여하는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전문연구요원이 연구과제 참여 중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을 제외 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A기관의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으려면 A대학 과제에 과제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속이 없는 연구자는 계약 후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으로의 병역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강사 인건비 지급

타 기관에 시간강사로 고용 계약한 연구원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지요?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7조에 의거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의목적에 따라 필요시 위촉되는 자로 시간강사 계약 체결 만으로 해당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제참여를 전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타 기관에 시간강사로 고용 계약한 연구원의 원소속기관은 어디인가요?

시간강사 계약이 아닌 과제참여를 전제로 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연구수행기관이 원소속기관이 됩니다.

시간강사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이 과제참여를 할 경우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과제참여를 전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연구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적용하되, 과제 참여를 전제로 고용계약 체결 후 시간강사 계약에 의한 강의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과제참여율 산정시 제외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외부참여연구원 증빙서류

외부연구원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제참여계약서(학생은 재학증명서로 대체),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율에 상관없이 해당 서류가 다 필요한 것인가요?

연구과제 참여자는 참여율과 관계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참여연구원이지만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기관장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외부 참여연구원이지만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더라도 연구원의 과제참여율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참여연구원 원소속기관장확인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 과제 참여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위해 외부연구원을 채용 시, 이공계열 연구원 외에도 인문계열의 연구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인문계열의 연구원도 이공분야 과제참여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 요건 상 인문계열 참여연구원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R&D 성격의 과제임으로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과제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며, 추후 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으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계약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4대보험 포함 인건비 계상

외부인건비 계상 시, 인건비에 실 수령액,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을 모두 계상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간접비에서 4대보험(개인/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을 별도로 계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계상기준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여총액에는 4대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므로 직접비의 인건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외부인건비 집행 방법

외부기관 소속인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 소속기관이 연구원의 참여율 관리를 해야하므로 연구수행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원소속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통보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또는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부당집행에 해당됩니다.

학생연구원 출연(연) 과제 참여

학생이 A출연(연)기관에 인턴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A기관은 정부출연기관이므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교내에서 학생인건비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시 모든 과제의 참여율을 합산하여 100% 이내라면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구조교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A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 학과 연구조교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의 참여율 100% 기준으로 인건비가 180만원인데, 조교 급여는 180만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나머지 참여율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석·박사과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조교' 등의 신분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조교 활동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과제 참여율 산정 시 제외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창업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대표가 아닌 학생창업기업의 소속 학생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취업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학생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창업한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하지만, 창업기업에 고용된 경우는 창업자가 아닌 직원신분으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학생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박사과정생인 경우 창업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별개로 기관 내 박사과정생 기준 인건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의 경우 사업 수익과 별개로 총 과제참여율 100%이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참여확약서

연구참여확약서에 월 인건비 지급 내역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수행 중 참여율과 지급액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구기간 중 참여율 및 지급액 변경은 주관기관 자체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은 변경 즉시 전문기관 보고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참여확약서는 개정 이후 부터 제출받으면 되는건가요?

2017.06.02.자 연구관리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라 2017.06.02. 이후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해 연구참여확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중인 학생연구원 인건비 집행

중학교의 교사이지만 휴직 후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는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 중에 있으며,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휴직 상태입니다. 이 학생이 학생연구원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으며 과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학위취득의 목적으로 휴직 승인이 처리된 문서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신 후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료 후 학생인건비 지급

참여 대학원생이 2018년 2월에 졸업유예를 하려고 하였지만,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 후, 연구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석·박사 수료생은 원칙적으로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석·박사 수료생이 연구생등록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적시스템에 연구생등록이 되어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시간강사 학생인건비 지급

전업시간강사의 경우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박사수료생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과제 참여를 전제로 고용계약 체결 후 시간강사 계약에 의한 강의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과제참여율 산정 시 제외하고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변경승인절차 문의

인건비의 경우 원래 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학생인건비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승인사항이 삭제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으로 보고를 하는데 인건비의 기준은 내부, 외부 지급인건비 그리고 학생인건비까지 포함인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인건비(내·외부)는 원래 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기본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 증/감액시에는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절차를 거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사후연구원 학생인건비 계상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박사후연구원입니다. 박사후연구원으로 학생인건비를 수령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단가기준은 연구수행기관의 박사과정생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해야 하는지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은 학생인건비 또는 외부인건비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인건비 지급 단가 기준은 연구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생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타 대학 소속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학생이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휴학 중인 타 대학 소속 학생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휴학 중이라면 연구과제 참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인건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학생연구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 석사과정생이 학생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선택사항입니다. 미가입으로 증빙이 어렵다면, 주관연구기관에서는 해당 연구원에게 타 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 중복 수령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타 기관에서 인건비 수령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고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학생연구원이 유학비자를 받으셨다면 유학비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의 가족 연구과제 참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가족을 참여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규정에 '가족을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단, 가족의 연구보조원 활용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이 없을 시 연구비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 감사원 등의 조사결과 및 지적 사항을 보면 배우자 및 자녀 등 연구와 관련성이 부족한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를 환수하고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행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이월

저희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입니다. 다년도 협약과제를 수행중이고 현재, 1차년도 과제는 종료되었습니다. 학생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이월 사용이 가능한지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기관 내 통합관리계좌로의 이체를 근거로 전액 집행 처리하기 때문에 이월은 불가합니다. 단,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은 동 비목으로 이월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 기관 학생인건비 이관

3차년도 연구과제 수행 중 A대학에서 B대학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관이 모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일 때, 2차년도 과제 수행에서 남은 학생인건비는 전문기관에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관이 가능한가요?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하지만, 다년도 계속과제의 연차종료 시에는 이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계 및 최종 종료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차년도 연구과제 수행 중 통합관리기관(A대학)에서 비통합관리기관(B대학)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년도 과제 수행에서 남은 학생인건비는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관이 가능한가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 8조에 따라, 비통합관리기관에서는 당해연도 기간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를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2차년도 학생인건비 잔액 부분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장으로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02. 연구장비·재료비

Q&A

3천만원 미만 기자재 구입 변경

과제 수행 중 당초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 기자재 대신 3천만원 미만의 다른 기자재로 변경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구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건당 3천만원 미만의 기자재(장비)에 대해서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기관 자체 승인 후 구입 가능합니다.

미계상 장비 임차료

사업단 세부과제에서 연구 분석 장비를 임차 사용하려고 합니다. 계획서에 미계상 되어 있는 연구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주관기관 내부 변경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집행이 가능하며, 미계상된 연구장비 임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주관기관 자체 승인사항입니다.
계약서, 단가표, 거래명세서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계상 PC 구입

연구개발계획서에 PC구매를 2백만원 1대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1백만원 2대를 구입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한가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PC를 포함한 범용성 장비는 구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과제계획서에 1대의 PC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구매는 불가합니다.
단,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변경 절차를 준수한 경우 PC 추가 구매는 가능합니다.

미계상 범용성장비 구입

과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프린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계획변경 후 집행이 가능한가요?

프린터는 범용성 장비이기 때문에 당초연구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관기관 계획 변경 승인 후의 집행은 불가합니다.

연구기간 동안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복합기(프린터, 스캐너)의 임차료를 연구비에 내부계획 변경 계상 가능한가요?

범용성 기자재(복합기, 프린터, 스캐너)의 임대료는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변경 절차를 준수한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미계상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PC를 구매함에 따라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집행 가능한가요?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집행이 불가하며, 연구계획을 변경하여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매 또한 불가합니다.

구입가능품목 / 범용성장비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장비·재료비 중 전산처리 소모품으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 비목에서 모니터 구매가 가능한가요?

과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장비는 구매 불가합니다. 단 PC(모니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변경 절차를 준수한 경우는 구매 가능합니다.

내부기관 장비대여료 집행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연구기관 내 연구센터에서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 있는 공동기기실로, 장비를 대여해주고 장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비대여료에 대한 결제 방법이 세금계산서 발행만 가능 합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 기관이 된다면 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할까요?

장비대여 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단, 합리적인 분석료 단가표에 근거하여 사용시간 및 소모품 사용량을 기록하고 사용자가 서명한 사용기록부 및 기관 내 회계부서장의 통제를 받은 전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품 납품기한

장비구매의 경우 최종(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가 되어야 하지만, 시제품 제작의 경우는 과제 기간 내에만 검수가 되면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 제작 경비 집행은 검수가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 검수가 완료되어 당해연도 연구에 활용된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비목 문의 / 시험분석료

시험분석을 위해 연구원이 직접 실험기관에 찾아가 장비를 사용한 후 장비 사용료를 집행할 때, 어느 비목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직접 임대한 연구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해당 사용료는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집행하시고 그 외 타 기관에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을 의뢰를 하는 등, 실험 결과를 받는 경우는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등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예산 증액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에 있던 금액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초계획서 상의 연구장비 재료비는 0원이었는데 증액이 됩니다.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계획 변경하여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3천만원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의 장비 구매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계상된 범용성 장비비용 증액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범용성 장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 구매 시 계상해 놓은 장비에 대한 금액이 당초보다 증액이 된 경우 연구계획변경 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범용성 장비가 당초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주관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변경절차를 거친 후 사업비에서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종료시점 장비구입 가능 여부

다년도 계속과제 진행 중 당해연도 연구계획서 상에 프린터 구입을 계상하였으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구과제 종료가 도래하였는데 해당 프린터를 구매해도 되나요?

다년도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 종료 시 과제종료일 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만, 최종 또는 단계 종료 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장비는 과제 종료일 2개월 이내에 구입 및 검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구종료시점 재료구입 가능 여부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 연구장비가 아닌 재료비 또한 연구비에서 구매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연구장비 재료비 중 장비는 최종 또는 단계 종료 후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재료비는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되어 있고 과제 수행과 합목적성을 갖는다면 과제 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과제 종료일에 임박하여 연구비 소진의 목적으로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항은 추후 정산 시 불인정됩니다.

이관 과제 장비 소유권

연구책임자가 3년간 과제를 수행하는데 A기관에서 1차년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장비를 구입하였고 이후 B 기관으로 이직한다고 할 때, 1차년도에 구입한 연구장비는 A기관에 반납을 하고 이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20조 2항(협약의 변경)에 따라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 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장에게 협약변경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

장비 구매처 변경

연구계획서 상에 공학프로그램 구매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과제 수행 중 계상된 프로그램을 활용목적 및 형태가 유사한 타사 제품으로 변경하여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용도의 프로그램을 타사 제품으로 변경하여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이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된 프로그램(범용성 제외)에 대한 세부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승인 후 사업비에서 집행하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관련하여 해당 과제와 합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과제 연계 장비 공동 구매

총 취득단가가 1억원 이상인 고가장비를 연구재단의 4개의 과제의 재원으로 분할하여 구매하고자 합니다.
공동 구매 시 한 개의 과제 당 3천만원 미만의 금액이 되는데, 이럴 경우 연구장비 도입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총 취득단가인지 과제별 구매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장비를 4개 사업의 연구비에서 분할 집행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장비의 총 취득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이 필수사항이며, 1억원 이상의 장비인 경우에는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장비 분할 납부

다년도 과제 수행 시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의 금액이 커서 차년도에 걸쳐서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구계획서 상에 차년도에 걸쳐 구매하고자 하는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집행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연구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장비구매는 단계(최종)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검수완료 되어야 합니다.

연구장비 참여기업에 설치 여부

과제 수행에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연구장비 구매 후 참여기업에 설치 가능한지요?

주관기관에서 구매 후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에 설치는 가능하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중 구매된 연구 장비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해야 하므로 주관기관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관기관에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 유형적 자산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잔존년수를 파악, 지속적 유지보수 및 관리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다년도 시작품 제작비 집행

다년도 과제 수행 중 1차년도에 계획서에 계상된 시작품 제작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작품의 특성상 물품 대금지급 후 시작품 제작 및 납품이 가능하고 제작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년도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1차년도에 시작품을 제작을 시작하였으나, 2차년도 제작완료가 되어 검수가 될 시 집행이 가능한가요?

1,2차년도에 연구기간동안 시작품제작비 집행 관련 된 부분을 과제계획서에 반영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중앙구매 기준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을 통하여 연구장비 재료비 단일 구매 총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앙구매 "권장"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관에서의 내부 규정 상에는 중앙구매 기준 구매는 100만원이 아닌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관기관 내 지침을 근거로 100만원 이상의 장비 재료비 구매 시 중앙구매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앙구매 관련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구매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내부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장비·재료비 단일 구매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앙구매를 권장합니다.

장비 유지보수 비용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로 구매한 연구장비가 아니지만, 연구 수행에 필요하여 기존에 연구실에 있던 장비를 사용하던 중에 장비가 낙후되어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리 비용을 해당 과제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해당 과제를 통하여 구매한 장비가 아니더라도 과제 수행 시 필요한 장비이며 자산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구비에서 수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범용성 장비 유지보수 비용

연구과제 수행 전 구매한 프린터기에 대한 수리비를 장비재료비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수리하고자 하는 연구장비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 장비에 대한 수리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성 용도의 프린터 수리비는 연구비에서 집행 불가합니다.

장비 설치 및 이전 비용

과제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경우, 해당 장비의 이전(설치) 비용 등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장비가 연구수행과의 합목적성을 갖는 경우, 해당 설치 및 이전비용은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승인절차를 진행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도기간 소프트웨어 일괄 집행

총연구기간이 3년동안 진행되는 다년도 협약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차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되어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3년동안의 프로그램구매 시 매년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1년차 과제 예산에서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구매해도 되나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년도 계속과제인 경우, 매년 계약하는 소프트웨어 구매가격과 3년 동안의 계약의 구매가격의 비교견적을 첨부하여 1차년도 예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운반 차량 비용

장비 운반목적으로 차량 임차 시,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이와 같은 장비 운반 목적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연구원들의 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연구과제 관련하여 연구조사를 위한 장비운반 목적의 차량임차는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으로 집행가능 합니다. 단, 장비운반 목적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해당 참여연구원들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여비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집행해야 합니다.

연구장비 현물 계상관련 문의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 시 어떤 기준에 맞게 계상하여야 하나요?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가 협약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연구수행기관 및 해당기관(참여기업)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정산기관의 증빙자료 요구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한 현물분에 대해 현금으로 회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 운용 방법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물품이 적기에 입고되지 않아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연구비에 산입해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 수입이 되는 건지요?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 집행입니다. 지체상금은 직접비로 환원하여 연구비에 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구매시 환율변동에 의한 장비비용 증액

연구계획서 상 연구장비 구매 금액을 2천만원으로 계상했으나, 실제 구매시 환율 상승 및 물품 관세 포함되어 장비 실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경우 장비심의를 요청하여 연구물품 구매 사전 승인을 받고 난 후 물품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가격 및 관세 미포함으로 3천만원 미만으로 보아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연구계획변경 후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환율 상승과 물품의 관세 등 포함하여 장비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이므로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NTIS/ZEUS RED system에는 언제까지 등록해야하나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부품만 구매 불가시 완제품 구매 가능 여부

스마트폰 내부 부품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회사의 기밀에 해당되어 부품만 판매하지 않아 완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서에는 자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재료비(부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스마트폰을 장비로 보아야 하는지 재료비로 보아야 하는지요?

부품만을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장비 항목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변경을 득한 후 부품을 따로 구매할 수 없는 사유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밀정산 시 해당 부품만을 구매할 수 있음이 확인될 경우 불인정되며, 해당 스마트폰은 주관연구기관의 자산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부품을 분리하여 사용 후 조립에 실패하여 완제품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에도 자산관리를 해야하나요?

연구비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의 자산관리 절차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만, 자산관리대장에 해당 물품은 부품 일부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불가 물품으로 관리하여 내용연수(고정자산 이용가능연수)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해당 스마트폰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사용가능하면 연구종료 후 연구책임자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가능한지요?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은 불가하시고 기관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03. 연구활동비

Q&A

국외여비_연구년 중 국내학회 참석

현재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연구년으로 해외 장기체류 중입니다. 학회 참석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여비에 대하여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중 어느 비목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연구년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을 득할 시, 승인 공문에 해당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이 명시되어 있고,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국내 입국 시 체재비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항공권 등 해외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국외여비 비목에서 집행하시되, 국내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국내 여비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외여비_연구년 중 국외출장

공동연구원인 교수님께서 연구년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연구계획서에 최초 계획되지 않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학회 참석 시 여비 및 학회등록비를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요?

공동연구원이 연구년 동안의 연구수행에 대한 주관기관 내부 승인을 득할 시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최초 계획서에 학회참석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주관기관 내부 변경 승인 후 연구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_차년도 학회 선 집행

다년도 계속과제를 수행 중 차년도 과제와 연결되는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회등록비 및 항공권 등 학회 참석과 관련된 경비를 당해연도 연구비에서 선 집행이 가능한가요?

다년도 협약 연구과제에 한해서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비 잔액이 있을 경우 차년도 연구기간 중에 예상되는 학회비 및 여비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는 동 관련 내용으로 집행된 경비의 증빙자료 및 내부품의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_연구비 집행 기간

다년도 계속과제 진행 중, 1차년도 사업 기간 종료시점에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결과보고 지연으로 1차년도 연구비 잔액을 2차년도로 이월하여 차년도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구비 집행은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동일한 사업년도에 발생해야 합니다. 출장결과보고가 지연되더라도 1차년도 사업기간 중 발생한 국외출장에 대한 출장경비는 1차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_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학회 참석을 위해 국외 항공권을 예매하는 중 해당 일정 항공편의 이코노미석 만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해야할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주관기관 여비규정의 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항공운임 업그레이드가 불가함에도 집행할 경우, 차액은 개인이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_학회 측 여비지원

연구책임자가 해외학회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해당 학회 측에서 일 80유로씩 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과제에서 여비를 받아도 이중지원의 문제가 없을까요?

국외 출장 시 주관기관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시되, 학회 측에서 포상금이 아닌 여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국외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_여비규정

출장지가 주관기관 여비규정상 '가'등급 지역에서 진행하는데, 물가가 지나치게 비싸서 인근 '나'등급 지역에서 숙박을 할 경우, 1일 숙박한도를 '가'등급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장 목적지와 상관없이 숙박지를 기준으로 '나'등급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연구계획에 의한 국내외 출장경비 집행은 해당 기관의 여비규정을 준용해야 하므로 자체여비규정을 벗어나 임의로 등급을 변경하여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출장지에 대한 등급이 '가'등급이라면 '가'등급으로 사전 출장 결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국외여비_항공 취급수수료

연구책임자가 국외 출장을 위한 항공권 구입 시 순수 항공권 비용 외에 여행사에서 부과하는 항공 취급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수수료에 대해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구과제와 관련된 국외 출장 시 여비지급은 주관기관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항공 취급 수수료가 항공권 발급 시 필요사항이라면, 국외 출장비 비목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국외여비_국제 면허증 발급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지역 간의 이동을 위한 차량을 렌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국제면허증 발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 시 여비지급은 주관기관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제 면허증 발급 수수료의 경우는 개인성 경비로 연구비에서 집행 불가합니다.

국외여비_ESTA 발급 비용

국외 출장 시 미국 ESTA 발급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요?

미국 ESTA 발급 비용은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외여비_차량 렌트

수행 중인 과제로 국외여비(스웨덴) 신청예정인데, 가는 지역이 대중교통 부재지역이라 렌트를 해야합니다. 계획서 상에 차량 렌트 비용은 계상되어 연구비로 처리하게 되면 출장비 중 일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국외여비 집행 시 주관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셔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렌트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다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 16조】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출장기간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로 삭감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렌트를 이용한 경우 추가로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국외에서 렌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 ÷ 연비(여비업무 처리기준 "Ⅳ. 2. 라"의 국내자동차 연비)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Ⅴ-2-마-2

국외여비_귀국당일 여비집행

국외 출장 시 오전 11시 5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귀국당일의 일비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국외여비 집행 시 주관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귀국당일에 대한 지급 기준이 별도로 없다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어 일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비_단순 학회 참석

논문은 게재하지 않았지만 과제와 관련된 분야이고, 저명한 해외 학회로 세계적인 연구 동향 및 정보 수집 차 학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실제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해당 학회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추후 정산 시 개인성 목적의 국외출장으로 확인된다면 불인정됩니다.

국외여비_학회로부터 자문료 지원

연구책임자가 일주일간의 학회 참석 중 학회에서 1시간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1시간 강의료는 학회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대한 출장 여비를 연구비에서 지급 가능한지요?

학회 측으로부터 체재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 후 여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체재비 지원이 없다면, 전액 연구비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학회가 연구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_단순 회의 참석

국외 출장 시 학회참석이 아닌 단순 회의 일정만 있는 경우에 국외여비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단순 회의일지라도 수행 중인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회의라면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출장 신청 시 출장목적 및 과제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 내부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_워크숍 참가자 여비

2박 3일간의 교육훈련생의 워크숍 및 차기 지원생의 설명회를 연구비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교육훈련생 및 차기 지원생에 대한 여비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비용이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요?

해당 워크숍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개최비용은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워크숍 개최의 목적, 기간 및 예상 소요비용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훈련생 및 차기 지원생이 현재 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니라면 연구비에서 여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교육훈련비_온라인 강의 수강

연구계획서상에 국내교육훈련비를 계상하였는데, 과제특성상 해외논문을 투고할 일이 많아 해당 교육훈련비 항목으로 인터넷 영어 강의를 수강해도 되나요?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연구비에서 집행 불가합니다. 해외 논문 투고를 위한 인터넷 영어 강의 또한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 따라 집행이 불가합니다.

교육훈련비_VOD 구매 가능여부

연구계획서에 기술정보활동비의 교육훈련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제 수행에 있어서 반도체 교육이 필요한데,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하여 반도체 교육용 VOD 구매비용을 교육훈련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연구계획서상에 반도체 교육용 VOD 에 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고, 해당 건이 연구과제와 합목적성을 갖는 경우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정산 시 연구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불인정 됩니다.

교육훈련비_수강료

TDS측정기와 분광광도계의 원리를 응용한 커피농도 측정지표 연구 및 측정기기 개발이란 연구를 새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출자간의 오차 없이 커피 수백건을 추출해야 하다보니 연구자 본인이 바리스타 커피 교육 수강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교육비를 연구비로 지출해도 될까요?

바리스타 커피 교육 수강료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합목적성이 있고 직접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훈련비로 집행 가능하나 추후 정산 시 해당 부분이 개인목적 및 다른 용도의 경우라면 불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정보활동비_용역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일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용역 진행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용역체결 진행이 가능합니다. 용역 체결 시 개인사업자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맞게 선정 및 집행을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서, 결과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술정보활동비_논문게재료 저자

논문게재 시 참여교수가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입니다. 참여인력이 논문의 제1저자인 경우에만 논문게재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논문게재료 집행 시 저자명에 참여연구원이 명시되어있다면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기술정보활동비_논문 이미지 삽화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논문 삽화 이미지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처리가 능한가요?

동 연구목적 및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연구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정보활동비_논문게재료 집행시점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논문게재료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간 내에 게재된 논문에 한해서 3개월 이내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게재된 논문도 집행 가능한가요?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된 논문게재료 집행은 연구 수행기간 중 사전 원인행위가 있을 때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집행이 불가하므로 계획변경 후 연구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정보활동비_논문 저널 표지

논문이 저널의 표지로 선정되어 표지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논문에 대한 저널 표지인 경우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기술정보활동비_단기인력 비용

연구과제 관련 설문조사 진행 및 자료수집을 위한 단기 인력 활용이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요?

설문조사 진행 및 자료수집에 따른 단기인력 활용 비용은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등에서 집행가능합니다. 단기인력 활용 집행비용은 주관연구기관 자체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가능하며,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물가정보 책자에 나열된 활용기준금액을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헌구입비_E-book 구매

연구비로 e-book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연구활동비의 기술정보활동비 내 문헌구입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도서 구입(전자책 포함)은 동 연구목적 및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구입 후 주관기관 연구기관 자산에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헌구입비_동일 도서 구매

현재 교수님 연구실에는 교수님을 포함하여 8명의 연구원이 있고, 그 연구원들이 1권의 도서로만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도서 3권을 구매하였습니다. 도서 3권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연구비에서 도서구입은 동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과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일한 책을 여러권 구입한다는 사항은 배포 및 홍보 목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참여연구원들이 1권의 도서로만 이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권정도 구입하였다면 사유서와 함께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산 등록을 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답례품_기프티콘

설문 인터뷰 수행 후 사례비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터뷰 수행하신분께 5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5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연구활동비에서 연구비카드로 그때마다 결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1만원 초과 답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설문인터뷰가 과제와 합목적성이 있으며,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답례품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설문조사 답례품으로 상품권 및 기프티콘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및 조사비 증빙자료(2015.11.1.부터 시행)】

- ○ 1만원 이하의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
- ○ 1만원 초과 답례품은 설문조사 답변지 또는 수령자 서명부
- ○ 1만원 초과 답례비는 설문조사 답변지, 계좌이체확인서

문헌구입비_연간 구독료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O'REILLY Safari라는 과학기술서적 전문 e-book사이트에 연간구독회원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연간으로 구독회원비를 내어 책들을 보는 것이 따로 도서를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면, 연간 구독 회원비를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간으로 구독회원비가 참여연구원 개개인이 도서를 구매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연간구독회원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만 집행이 가능하며, 과제기간 외 연간회원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집행 시 비교견적 및 e-book 구독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비_문자서비스

연구과제 특성상 임상실험(또는 설문/면담조사)이 필요하여, 피실험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실험일정 안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대용량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문자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연구비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임상실험 관련 피실험자 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사전 내부 승인을 득한 후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의 비목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 시 문자서비스 이용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_신규 채용공고

과제 수행 중 전임연구인력 모집 공고료를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신규 채용을 위한 공고료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최비_식대

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 대한 식대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회의.식대비(다과)와 연구활동비-세미나개최비 중에 어떤 항목으로 처리하여야하나요?

세미나 개최를 위한 경비 일체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최 현수막을 제작하려 하는데 직접비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세미나 개최 경비 내부 결재 시 승인을 득한 사항이라면, 현수막 제작비용 집행가능합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 주차권을 나눠주고자 할 때, 간접비로 처리하여야하나요? 아니면 직접비(연구활동비-세미나개최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세미나,워크숍 등 행사 개최 시 관련내용을 내부결재문서에 기재 후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주최측이 추후 일괄 정산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최비_숙박 장소

워크숍을 진행하는 연수원에서 회의 및 숙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인원수가 많은 관계로 일부는 해당 연수원이 아닌 주변 펜션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숙박 장소가 상이해도 연구비 정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워크숍(세미나 심포지엄) 개최에 대하여 사전 내부 결재에 많은 인원으로 인근 지역의 숙박업소로 분산하여 진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을 득하신 후 연구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단, 숙박비 지급 시 내부 여비규정을 초과하여 집행은 불가합니다.

시험 분석료_내부거래

A대학 공동기기센터(대학소속)의 장비를 사용하고 기기 사용료 및 시험분석료를 A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비에서 집행할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이 되어 집행이 불가능한지요?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비로 A대학 공동기기센터 장비를 사용하는것이 내부거래에 해당이 되는지)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거나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며 합리적인 분석료 단가표에 근거하여 사용시간 및 소모품 사용량을 기록하고 사용자가 서명한 사용기록부 및 기관내 회계부서장의 통제 받은 전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비_보험료 지급

다년도 계속과제 수행 시, 당해연도 연구비에서 총 연구기간의 임상실험 피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년의 보험료를 지출하고자 하는 사유는, 3년 계약의 보험료가 3,000,000원이고 1년의 보험료는 2,000,000원이기 때문에 3년 보험료 집행 시 연구비 절감이 됩니다. 이 때, 당해연도 연구비에서 3년 계약 후 집행이 가능한지요?

다년도 계속과제에 한하여, 연구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보험료라면 일괄 선집행 가능합니다. 단, 1년 보험료와 3년 보험료에 대한 비교견적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_임상실험

특수 조명(써카디언 램프)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피실험자의 생체신호를 분석을 위한 임상실험 시 피실험자는 5일동안 임상실험실에 머물면서 수면다원 검사 등 생체신호 검사, 타액채취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1.피실험자가 생활하는 동안 세끼식사 및 간식 등을 넣어 주어야 하며
2.임상실험 동안 생활에 필요한 물품구매
3.그리고 피실험자 보상비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 항목이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 수행과 관련된 임상실험 중 소요경비는 사전 내부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기 바라며, 피 실험자 보상비는 주관기관 자체 기준을 근거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비_IRB심사료

교수님께서 연구를 위해 타기관(병원)의 환자에 대해 임상연구를 진행하십니다. 해당연구 진행을 위한 해당기관 IRB심사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심사료가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된 IRB 심사 비용이면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내부 변경절차를 진행 후 연구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비_피험자 사례비 기부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대상자의 동의하에 그 사례비를 재원으로 여성용품을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기부하는게 가능한가요?

연구책임자가 대상자의 동의 하에 사례비를 직접 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본인 통장에서 인출하여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기부하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전문가 활용비_국외 자문료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외국대학에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을 국외전문가 기준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외국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라면, 국외전문가활용으로 지원가능하며,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전문가 자문확인서(자문내역 포함), 자문회의 참석확인서, 계좌이체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활용비_지급 대상

자문을 받을 때 석·박사과정생에게 자문을 받으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교 지침에는 학계 쪽에서는 1호, 2호로 구분되고, 1호는 전임교원 이상, 2호는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만 성립된다면 그리고 연구와 관련한 이력이 있다면 연구비에서 자문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주관기관내부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관내부규정에 석·박사과정생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집행이 불가합니다.

전문가 활용비_최소 단위 부서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시,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 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학을 예로 들었을 때, 최소단위 부서가 동일학과의 세부전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호부터 제3의2호까지의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 3조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합니다.
단,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직원은 제외하시어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정보 조사비_특허 기탁비

연구과제 진행 중 개발한 미세조류를 추후 특허출원을 위해 특허기탁할 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연구진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고 직접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는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특수 건강검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수행 중에 특수 물질(ex) 방사성원소)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참여연구원에게 필요한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비목으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수행 중에 특수 물질(ex) 방사성원소)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해야 연구일 경우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은 간접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피험자 답례비 지급 방식

현재 본교에서 한-미 인문분야 특별협력사업(협력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서 실험 후 사례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실험은 유치원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1인당 2만원씩 사례비로 총 24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통 각 개인에게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치원 아동이고, 인원수가 많아 유치원으로 직접 240만원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좌이체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례비 지급은 피시험자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미취학아동으로 계좌발급이 어려울 시 유치원생 부모님께 이체하되 유치원생과 학부모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신 후 연구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등록비_차년도 선집행

다년도 연구과제 학회등록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 원인행위(학회참가)를 한 연구과제 관련 학회 등록비에 대해 당해 집행 연구비가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2차년도 연구비에서 일부를 집행할 수 있을까요?

다년도 협약과제이고 연구비 잔액이 있을 경우 연구비 선 집행은 가능하나, 당해연도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부족하여 차년도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피험자 답례품

아동 비만과 관련하여 초, 중,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초,중,고)에게 수당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신분증, 통장사본 등)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계좌이체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학생들에게 답례비 집행이 어려우시다면, 답례품(상품권)으로 대체 지급은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매 시 연구비카드로 집행이 원칙이며, 지급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에서 학생들이 야외에서 사진 촬영하는 활동이 있는데,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보험료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야외 활동에 따른 보험가입비 집행은 가능하나 정산 시 확인 가능하도록 사유서 및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 명시 및 증빙을 자세히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등록비_협의회 가입비

대학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수행 중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에서 가입비를 납부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해당 가입비를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협의회 가입비는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직접비에서 집행이 불가하며,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최비_취소 수수료

회의 개최에 대한 내부기안을 하였으나, 전일 회의 개최가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회의장 임차료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인정행위 이외에는 연구비에서 집행 불가합니다.

- 학회일정변경(주최측), 천재지변, 유행성질병(메르스 등), 외교부의 적색경보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정산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 증빙자료 : 학회취소알림내역, 메르스나 천재지변의 경우 추후에도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기사, 항공사 지연 안내문 등

학회등록비_발표자료 구입

학회참가 시 논문집이나 발표 자료를 학회등록비와 별도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을때,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학회 참가시 논문집 등 자료를 유료로 구매가 가능하며, 문헌구입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학회등록비_연구기간 외 집행

연구책임자가 2018년 6월에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16일까지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비용절감을 위하여 2018년 5월 9일 사전등록을 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연구 개시일 이전의 연구비 집행은 당해연도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원인행위가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 있을 경우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학회등록비_이사회비

연구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의 경우만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과제와 연관된 학회의 종신학회비가 아닌 이사회비를 집행이 가능한가요?

학회 이사회비는 당사자가 해당 학회에서 직함을 받은 경우로 개인성경비이기 때문에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학회등록비_참여종료 시 연회비

해당 연구원의 국제학회참석을 위한 학회 입회비 및 연회비 결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나, 해당 외부참여연구원의 경우에 유효기간 내에 참여가 종료됩니다. 외부참여연구원의 참여종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연회비 납부가 가능한가요?

연회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동안 유효하나, 해당 외부참여연구원의 경우에 유효기간 내에 참여가 종료되면 종료 이후의 연회비는 월할계산하여 반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04.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_식비 중복집행

매뉴얼에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라는 부당집행 기준에서 "해당 식대"는 출장비에 포함된 식대와 회의비 식대 중 어느 것이 부당집행인가요?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는 지급받은 출장비의 식대를 말합니다. 출장 중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회의비 지출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출장비에서 식대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회의비 집행과 관련 사전 내부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출장비 중 식대를 21,000원/1일 수령하고, 회의비 식대로 1회 집행했을 경우, 여비 식대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7,000원은 제외하고 식비 지급을 해야합니다.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하지 않고 다과비만 집행한 경우 출장비의 식대를 제외해야 하나요?

회의비 식대를 사용하지 않고 다과비만 집행하였을 경우 출장비의 식대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과비 집행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_연구년 중 국내 출장여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자가 연구년입니다. 연구년 중 해외로 파견 등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수행과 관련된 국내출장 시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원이 연구년에 이동(국내·외)시에는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로 과제계획서에 해당 과제수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무용품비_결제방법(법인카드 사용 가능여부)

온라인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할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연구비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연구비 지급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법인카드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면, 비교견적 및 사유서를 증빙자료로 구비하여 연구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사무용품비_구입가능품목(연구노트)

연구비로 연구노트 제작비용을 집행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연구실에서 연구노트 50권 (약 50만원)을 제작하여 집행하고자 하는데, 사무용품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노트는 사무용품비로 집행가능 하지만, 연구비 소진 목적을 위한 구매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무용품비_과제종료시점 임박 사무용품 구입

현재 3차년도 중 마지막 차년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종료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연구비 집행 건 중 사무용품비를 연구 종료일 전에만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무용품비 집행은 연구기간 내에 집행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간 종료 시점에 과다 집행 또는 연구비 소진의 목적이라면 추후 정산 시 불인정 됩니다.

야근식대 집행 기준

평일 점심식대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5시 30분에 식대를 결제한 경우 야근 및 특근 내역을 증빙서류로 구비하고 있다면, 추가로 사유서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동 연구와 관련하여 야근을 하였다면 야근식대는 주관기관의 야근식대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회의비가 아닌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된 금액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합니다.

연구환경유지비_연구기간 외 렌탈비용 처리

연구환경유지비 중 정수기 렌탈비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수기 렌탈비를 1년 단위로 결제를 하는 경우, 연구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렌탈비용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정수기 렌탈 비용은 연구기간 내에서의 집행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에 대한 렌탈 계약기간이 남은 연구기간보다 긴 경우, 마지막 연도에 대한 렌탈 비용은 월할 계산하여 연구기간 개월 수 만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비 및 야근식대 휴일 집행

휴일에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의비 집행은 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휴일에 회의를 실시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전품의와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휴일에 야근/특근식대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식대의 경우 주관기관 식비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야근/특근일지에 근무현황 일시, 성명, 시간 등 상세내역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와 관련성이 없거나 연구자 개인사유에 의한 집행은 불인정입니다.

회의비_10만원 이하 회의비 집행 증빙 서류

회의비 청구 시 회의 참석자의 서명이 꼭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회의록 제외(과학기술분야만 해당)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영수증만 구비해도 되는지요?

회의록에 대한 구비는 권장사항이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규정상, 회의비 집행 시 서명부가 필수 증빙서류일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구비하시면 됩니다.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또는 매출전표)만 구비해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비_내·외부 참석자 기준

과학기술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 중 타 기관소속 연구원이 참여할 때 회의비 집행 시 타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은 외부인으로 인정이 되나요?

내부 참석연구원과 타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타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을 외부인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이 아닌 주관기관 소속자는 내부인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참여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주관기관 회의비 집행 시 연구수행기관과 동일기관 소속이므로 내부인으로 구분합니다. 단일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합니다.

회의비 집행 및 시간

파견중인 대학의 특성 상 주로 야간에 회의 및 실험을 많이 합니다.
야간회의도 가능한가요?

야간회의 및 실험 후 회의비 집행 시 사유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고 연구수행과 합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심야시간 회의는 감사원 등에서 집행을 지양하고 있는 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국내여비_휴일 국내여비 집행

국내여비 지급 관련하여 국내학회 참석 일정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여비지급 신청 시 공휴일에 대한 숙박비, 식비, 잡비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내외출장 여비는 주관기관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학회일정 등 공식적인 일정에 대한 여비 집행은 가능하지만, 단순회의 등 확인이 어려운 목적의 공휴일 여비집행은 지양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국내여비_출국 전 국내 숙박비 집행

비행기 탑승시간이 이른 아침시간이라, 첫차(시외버스, KTX열차 등)를 이용해도 탑승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 하루 전날 공항 근처에서의 숙박이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른 비행기 탑승시간으로 당일에 공항까지 이동수단이 없다면 집행이 가능하지만, 공항버스 및 기타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탑승시간 내에 도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익일 전 공항근처에서 별도의 숙박비 등을 집행 하는 경우에는 정산 시 불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숙박비 상한액 초과집행

연구자가 협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참석을 목적으로 출장 및 숙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관기관 여비규정으로는 숙박비 상한액이 8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협회에서 제공(연계)하는 숙박시설의 최저 가격이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숙박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관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가능 합니다. 주관기관 규정에 학회 및 협회에서 제공되는 숙박시설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집행하였다면 가능하지만, 규정에 없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내여비_법인카드 결제가능 여부

과제기간 중 연구비카드 발급 전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국내 출장여비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비 지출은 연구비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_실비 지급 건 계좌이체 가능 여부

규정에는 기관 기준에 근거하여 여비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기관은 내부기준이 숙박비, 식비, 일비 정액이며 교통비가 실비입니다. 교통비가 실비이기 때문에 연구비 카드로 사용(실비 정산시)해야 하는지요?

여비는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숙박비, 식비, 일비는 정액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하시고, 교통비는 실비집행으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여비는 내부규정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_계획서 미계상 출장 건

당초계획서에 연구과제추진비의 국내여비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연구과제 관련 국내 출장 건이 발생하면 연구계획 변경을 하여 문서를 구비해야 하는지요?

당초 연구계획서에 국내 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주관기관 내의 자체 비목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_과제종료시점 출장 가능 여부

과제 종료시점에 출장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연구 종료 되는 과제연구비로 3월 27일~30일 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지요?

국내여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의 출장비는 집행 가능 하며, 출장목적이 연구과제와 합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여비_미지급 참여연구원 여비 지급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이 학회등록비 및 출장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인건비 미지급 또는 현물로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경우도 모든 직접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타 기관 소속 인건비 미지급 참여연구원도 학회등록비 및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타 기관 소속 연구원 여비 집행 시 주관연구기관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기준이 아닌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_시내교통비 지급 가능 여부

국내 출장 '서울-대전' 일정으로 서울 내에서 기차역까지 택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택시비도 교통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또한 대전 내에서도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내여비는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관기관 여비 규정에 대중교통(택시포함) 집행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국내여비_식비 중복집행(숙박비 조식포함)

국내출장 시 학회 지정숙박을 이용 하였는데, 조식이 포함되어 결제 되었습니다. 여비 중 식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출장비 집행 시 이중식대 집행은 불가합니다. 숙박비 결제 시 조식이 포함되었다면 출장비 중 식비에서 1식을 차감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_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

다년도 과제에서 1차년도 마지막 일자에 발생되었던 국내출장을 다녀왔으나, 여비 신청을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못했습니다. 이후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2차년도 연차과제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국내여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가 있고 출장목적이 과제와 합목적성이 있을 경우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1차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국내여비_연구목적 외 집행

출장목적이 소위원회 회의 참석이지만 해당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여비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본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합목적성을 갖는 회의 참석(소위원회 회의)이라면 가능하나, 타 과제의 위원회나 평가 등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불인정 됩니다.

국내여비_국내출장 출발지역

본래 근무지가 대전인 연구책임자가 연구년으로 서울에 위치한 타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연구수행 중 울산으로 국내출장 일정이 생겼습니다. 여비지급 시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여비를 집행해야 하나요?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승인시에, 과제계획서에 계상된 국내외출장이고 연구기관을 서울에 있는 기관으로 변경했다면, 현 근무지를 기준으로(서울-울산) 여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이 국내출장을 갈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의 소속기관을 출장 출발지로 설정해야 하나요?

타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 연구원의 소속기관 근무지를 출발지 기준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_강의를 위한 출장여비 지급

연구책임자가 연구재단에 강의를 위해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구과제에서 출장 여비 지급 가능한지요?

강의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집행 가능하며, 해당 출장경비가 지급받은 강의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중복집행으로 불인정됩니다.

국내여비_권역별 설명회 참석 여비

현재 이공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교육부·과기정통부) 권역별 설명회 참석에 대한 여비(국내여비)를 해당과제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요?

해당 권역별 설명회가 수행중인 동 사업에서 개최되고 과제와 합목적성이 있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역별 설명회는 과제 신청에 대한 설명회로 과제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여비_출장 시 타지역 경유

용인에 근무지가 있는 연구책임자가 경주 출장을 가는데 지인들과 만나 가기 위해 대전을 경유했습니다. 이때 용인에서 대전으로 가는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목적지 경유 비용은 불인정됩니다. 경주출장이 과제와 합목적성이 있다면 용인(출발지)에서 경주(목적지)까지의 여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국내여비_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공무원이 사립대가 주관기관인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때 사립대 여비규정을 따르지 않고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기준이 아닌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내여비_공무원 여비규정 변경 시 지급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지급기준 국내 숙박비 지급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실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은 국공립대학교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데 여비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기관이라면 여비 지급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국내출장 시 실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내여비_주관기관 여비규정 적용

교내에서는 조교수가 부처장 직급의 보직을 맡고 있을 때 보직에 해당하는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직자가 연구와 관련한 출장을 갈 경우, 보직에 따른 직급 기준을 적용하여 교내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 직급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관기관 규정상에 보직자는 보직에 따라 여비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여비규정은 불인정 됩니다.

국내여비_사업단 자체규정 적용

사업단과제로 현재 사업단이 총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단의 특성 상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출장경비를 집행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단 자체규정 등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후 집행은 불가합니다.

국내여비_여비 증빙자료

1박 워크숍을 계획 중입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는 연수원은 1개의 방당 8~10명인원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별 숙박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숙박비 개별 영수증을 구비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한가요?

개인별 영수증 구비가 어렵다면 총 숙박비와 총 참석인원으로 개별 숙박비 금액을 산정하고, 주관기관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_타과제 연계 지급

세미나 참가비와 교통비를 BK21 플러스사업에서 지원받고 체재비를 기본연구지원사업(SGER)에서 나누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BK21사업과 기본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제와 출장목적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연계하여 여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단, 타 과제에서 일부 체재비를 지원 받을 경우, 본 과제에서 중복하여 집행은 불가합니다.

국내여비_항공료 지원

4월에 부산에 학회가 있어 대중교통이 아닌 비행기를 타고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능한 지역인데 항공료 운임 지원 가능한가요?

국내여비는 주관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주관기관 여비규정 범위에 국내 출장 시 항공료 지급 가능여부 등의 상세한 부분이 명시된 경우라면 집행가능 하지만,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불인정 됩니다.

05. 연구수당

Q&A

최종 종료 후 집행

연구과제가 최종 종료 되었습니다. 논문게재 등의 사유로 연구수당을 과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집행해도 되나요?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지급 시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 대한 기여도 평가라면 원인행위가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 있으므로 연구수당 집행은 연구비 사용실적제출 시 까지 가능합니다.

연구수당 부당 집행 기준

과학기술분야 사업 수행 중입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단독수령하고 하반기에는 단독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반기에 연구책임자가 수령한 연구수당이 부당집행에 해당되나요?

각 지급 회차 중 연구책임자에게 단독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더라도, 총 연구기간 내에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부당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각 회차 연구수당 지급 시 평가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지급해야 합니다.

1인과제 연구수당 단독수령

당초 계획서상에는 연구책임자 및 학생인건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에 적합한 학생이 없어 학생연구원 선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계상되어 있던 학생인건비 전액을 타 비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연구수당 단독수령 가능한가요?

참여연구원이 없이 연구책임자 1인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수당 단독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책임자 외의 참여연구원이 당초계획서에 계상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수당을 단독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독 수령 가능 여부

연구기간동안 한 달간만 외부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여도 평가에 한 달간 참여한 연구원의 기여도를 '0'으로 기재하고, 연구수당을 과제 책임자 1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초계획서에 참여연구원 계상 없이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수당 단독수령이 가능합니다. 외부 연구원이 수행 중인 과제에 한 달간 참여를 하였다면, 참여기간동안의 기여도 평가 후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수당 집행 비율

연구수당 집행 시 실 지급된 인건비 기준으로 20% 이내만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획서에 계상한 연구수당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인건비(현물 및 미지급인건비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하여 20% 이내로 계상이 가능하며, 집행 시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로 집행해야 합니다.

연구수당 증액 및 감액

연구수당을 감액하여 다른 비목으로 전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당 감액은 주관기관 내부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비목 전용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총 인건비의 20% 미만으로 계상되어야 해서 15%로 계상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연구수행 중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20% 미만인 18%로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관리규정 상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의 경우 당초 계획서보다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관과제_기존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지급

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이직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된 경우, 기존 소속 기관에서 참여하던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제 기간 내에 참여연구원이었다면 기여도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 이월금 집행

다년도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과제에서 연구수당 잔액을 이월 후 차년도 과제 진행 시 연구수당을 이월금 포함하여 지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 이월금 잔액은 전문기관의 이월승인을 받은 경우 차년도에 연구수당으로 이월 후 집행이 가능하며 주관기관의 기여도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합니다. 단, 차년도 연구비에 계상된 연구수당과는 별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 감액기준

연구수행 중에 인건비를 감액할 경우 감액된 비율만큼 연구수당을 비례 감액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연구수당이 실집행 인건비의 20%이내이면, 별도 감액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4.8.12.>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했지만, <2014.8.12.>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는 인건비를 당초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의 20%이하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수당 정액 지급

연구수당 지급 시 연구참여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정액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당은 정액 지급이 불가하며, 연구기간 1개월 이후부터 주관기관의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기여도 평가 실시 후 차등지급해야 합니다.

해외참여연구원 연구수당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해외 기관에 있는 연구원이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 후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연구년 중 연구원 연구수당 지급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이 해외 연구년일 경우, 연구년 기간 동안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지급이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동연구원이 연구년인 경우, 주관기관의 내부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참여연구원으로서 자격이 유지가 된다면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급하기 바랍니다.

06. 위탁연구개발비

Q&A

위탁연구과제 부가가치세

위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제가 과세일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위탁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세대상 연구과제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총 연구비에서 매출부가세(10%)를 연구활동비에 계상하고 직접비 사용 시 발생하는 매입부가세는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매입부가세를 제외하고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여 입력하게 되면 이지바로 시스템 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공급가액으로 연구비 집행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연구비 잔액으로 처리되어 연구비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는 시기와 연구기간이 다른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는 시기와 관계없이 연구비 집행액 입력 시 선제외하고 입력합니다. 추후 기관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 받으셔서 상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탁과제에 대해 과세처리를 해야하나요?

관련 부가세법에 따라 <면세범위>"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될 경우 면세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7. 간접비

Q&A

간접비 감액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1억 미만의 과제에 대해서는 기관 고시비율이 아닌 총 연구비의 15%로 간접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부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간접비의 일부를 직접비(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간접비는 주관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 연구계획서 변경 승인 후 직접비로 감액은 가능합니다. 단, 당초 계획보다 증액은 불가합니다.

비영리기관 간접비 기관 흡수

주관기관 간접비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간접비를 집행관리하고 사용 잔액은 별도로 기관에 적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관기관에서 간접비 사용 후 잔액을 적립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 일괄흡수 처리하여 집행관리 후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사업의 연구가 수행 중 중단되거나 협약해지 되는 경우에는 간접비 잔액을 월할 계산하여 반납 처리해야 합니다.

연구지원비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통해 융합연구공간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신축공간에 사용될 통신비와 보안시설설치로 인한 초기 설치비용이 매월 일정금액 청구됩니다. 이 부분이 간접비에서 지출 가능한가요?

비영리기관인 경우 간접비 집행은 내부규정에 준용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합니다.

특허출원비 직접비 지출

당초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제특허 출원 비용을 직접비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주관기간 내 연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국제특허 출원 비용을 직접비에서 지출 가능한가요?

특허정보조사비와 관련된 경비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경비(우선심사비용 등)는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냉·난방기기 설치비용

냉·난방기기 구입 시 설치비용을 직접비의 연구환경유지비로 집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간접비로 집행해야 하는지요?

연구수행을 위해 환경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기 설치 비용은 연구환경유지비에서 집행 가능하지만 기기 설치를 위해 공간 구축을 위한 공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간접비 항목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저희 본교는 연구실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제계획서를 작성중인데, 해당과제에서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나요?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연구기간 내 일괄 흡수하여 주관기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집행하기 바랍니다. 단, 과학기술분야 사업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 총액의 1~2%를 의무적으로 간접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변경 후 간접비 처리

주관기관 변경으로 과제 이관 시 간접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전문기관의 과제 이관처리가 최종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간접비 잔액을 월할 계산하여 변경 후 기관으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폐기물 처리비용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액·폐수는 해당 과제에서 산출되는 폐액·폐수의 양과 그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간접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폐액·폐수가 발생하는 특수한 과제들의 경우 이를 간접비로만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원래 계획서 상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구기관 자체 내부 규정 등에 폐액·폐수 관련 산출근거 및 처리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험복 집행

연구실 실험복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비목으로 집행하면 되나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을 위한 경비 집행(실험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 등)은 간접비의 연구지원비(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분야)

상 담 사 례 집

▶ 저 자 : 한국연구재단 경영관리본부 정산실 정산총괄팀
▶ 발행일 : 2018년 11월
▶ 인쇄일 : 2018년 11월
▶ 발생인 : 노정혜
▶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 본　　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 서울청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 가　격 : 비매품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경영관리본부 정산실 정산총괄팀 1544-6118

※ 이 책의 내용은 관련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등 개정 시 이에 다르며, 위 규정의 시행시기 및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 책의 원문 파일은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자료실- 사업관리규정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며 책의 내용을 재단의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분야)

상 담 사 례 집

한국연구재단